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3. 21.(화) 16:05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⑤ 의결사항

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7-14-080)

-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 계획을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평가대상, 평가영역, 평가배점 및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 (주)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14-081)

○ (주)케이티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기가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케이티는 이용약관을 통하여 기가LT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속도, 커버리지 등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제재는 하지 않고,
-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14-082~089)

○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관련 43개 유통점이 '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등을 위반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관련 43개 유통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 같은 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억9천4백만원, 케이티에 3억6천1백만원, LG유플러스에 9억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 150만원의 과태료,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 대해 각 100만원의 과태료,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라.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7-14-09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 같은 법 제13조(사실조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한 판매점에 대해 제22조(과태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제2호 너목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마.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CBS 대구음악FM방송국, (재) 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 (2017-14-091)

- 방송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CBS와 (재)불교방송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 (재)CBS 대구음악FM방송국, (재)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에 대하여 직원들에 대한 재난방송 교육계획 및 지역 인재의 활용 계획 등의 허가조건 및 장비 투자시 중소기업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 등의 권고사항을 부가하고,
 -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이 적정하나, (재)CBS와 (재)불교방송이 운영하는 기존 방송국과의 허가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19년 12월 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바. (주)지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17-14-092)

-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따라 에스지건설(주)이 신청한 (주)지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에스지건설(주)이 확약한 고배당 지양, (주)지원 지급 보증 해소 등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향후 (주)지원1 재허가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사.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14-093)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5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사전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표현을 “미래부가 사전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란 표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함

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7-14-094)

-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사 재허가에 대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에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과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㉞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행정예고, 규제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㉟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8:10)